

발행경리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金在克

특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TEL. 568-6651~2
568-5595~6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訓會
● ● ●
創奉誠
意仕實

活力和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標準설계 基準書 편찬

방어진·대포항 등 整備계획조사

수산청은 올해 8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계획조사 4개항, 수처리시설 4개항, 환경영향평가 3개항 및 어항표준설계 기준서를 편찬할 계획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시설완공 후 장기간의 경과로 항새들의 여건변화와 시설노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방어진, 대포항 등 3개항의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조사를 실시하고, 파랑등등으로 인한 연안포사 이동으로 발생된 항내 파몰 및 해안침식현상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방어진, 오산, 구산항시설을 설계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산청도 4개항의 환경영향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포함한다.

정비계획조사를 실시하고, 예측, 분석, 평가하고이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축산, 김영, 대면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청은 어항시설을 설계할 위한 설계조건,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에 대한 설계의 기준을 편찬, 어항건설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어항시설준공률이 낮은 수역의 어항시설을 수처리 시설사업과 지원항내에 조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조식補強 예산·기능 大幅擴大

수산청協會 법정기능 수행을 強化

수산청(이하 한국어항협회)은 4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산업법」 개정안(제17516호)에 따라, 법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청의 최근 마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수산청의 법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청의 법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어항협회 活性化 방안 마련

어항관리·설계·감리移讓 清掃船 운영도 위탁키로

한국어항협회는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어항관리·설계·감리 업무를 수산청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1.3종 어항의 유수관리, 기타 협회와 수행 가능한 업무 등도 위탁키로 했다.

「漁港協」 활성화의 「效率」

「漁港協」은 그동안 협회가 창립 이래 출자·출연해 온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임에 협회와 모든 어항협회에 상수를 들이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수산청의 과의 역할, 1.3종 어항 유수관리, 기타 협회와 수행 가능한 업무 등도 위탁키로 했다.

水産제도 과감改革

수 산 청

수산청은 올해를 수산제도 개혁의 해로 정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바다환경을 살리면서,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수산청의 과의 역할, 1.3종 어항 유수관리, 기타 협회와 수행 가능한 업무 등도 위탁키로 했다.

無限 경쟁 시대에 감독강화도 위촉

無限制 경쟁 시대에

그런데 한가지, 인력선출과 일부구성의 대한 업무의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어항의 의무의 수급을 갖게 한다. 협회를 독립법인으로 인정한다면, 구태의 재연이 자취 없게 되고, 어항 내부 규정정도는 협회 태시키고 말지도 모른다. 우려 자체에 대해, 본 논 조도 재고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자율성 보장이라고 정부 정책과 상이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어항시설 질서 확립의 해로

수산청은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어항시설 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예산·기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리토록 했다.

또 어항시설 불법사용자에 대해 1차적으로 자진정거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키로 했다.

수산청은 1.3종 어항 시설의 기능 강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안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올해 1.3종 어항시설관리 목표도 설정하고 어항시설관리 세부계획을 이같이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청이 마련한 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폐정 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항시설 사용자가 월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어항시설준공률이 낮은 수역의 어항시설을 수처리 시설사업과 지원항내에 조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폐유 수거처리 어민 적극참여

수산청이 해양환경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3종 어항내 폐유수거처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많은 어민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선박에서 사용되던 경유, 엔진오일, 각종 유류 등 오염물질은 각종 유류 중 가장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간 어민들의 이를 바다에 투기하던 것이므로, 추진함에 따라 수산업법 제39조 제4항 제6호를 개정하여,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등 6월부터 각 어항에 폐유수거처리를 위한 피크업 차량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수산청의 과의 역할, 1.3종 어항 유수관리, 기타 협회와 수행 가능한 업무 등도 위탁키로 했다.

95년 諸經費率 기준 확정

최고 0.4% 上向조정키로

長期工事 0.1~0.3% 下向

原價산정시 適用

조달청이 2월 14일 발표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에 대한 원가산정시 적용하는 기타경비율이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최고 0.4% 상향조정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비율의 일반관리비의 산정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비해 기타 경비율은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조정됐다.

4% 상향조정됐으나 30억이상 50억미만 규모로 공이 37개월이상 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공사비 2백억원이상 규모로 공이 37개월이상인 공사의 기타 경비율은 6.1%로 전년 대비 0.2% 낮아졌다. 이와 함께 공사규모 분류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지난해의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50억원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등 6개 분류로 세분화했다.

산하기관 直接契約 요청

建交部 行政소요일 短縮등 기대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공사를 집행할 때 사전에 장관에게 반드시 공사계약요청서를 제출, 내용검토가 끝난후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토록 하던 제도를 없애고 직접 계약요청을 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장관경유제를 시행할 경우 비록 사전통제를 통해 공사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수는 있으나 시행기관과 본부가 검토를 중복 실시함으로써 행정소요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發注者가 下都給대금

公正去來委 시행령 訂正 입법 예고

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세업체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포괄해 비등록 영세업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원사업자로 분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건설업 엔지니어링

“地域제한 경쟁 부작용 크다”

財經院 小規模 공사사도 廢止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 지역업체들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제한경쟁제 도입이 문제되고 있다.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90조1항5호)에는 예정공사비가 20억원미만(전문공사·전기공사·수리·인양공사)인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그 지역에 주된 영업을 가진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竣工표지판에 記名

自矜心·책임감도 높여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준공이후 발주에서부터 시공, 감리, 현장감독, 준공검사까지 이르기까지 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자

명과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원 현장감독자 현장시공사 준공검사자의 이름을 명기해 영구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선진技術導入 急増

大規模 시설사업 増加로

대규모 시설사업 증가로 지난해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선진기술 도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도입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업계의 고기술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업체의 기술도입계약은 총 1백64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정유화학 분야 33건 △전력분야 29건 △건설분야 26건 △기계분야 22건 △원자력분야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성격별로는 △기본 설계 52건 △공정기술 41건 △감리업무 24건 △설계·시공 및 평가업무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취약분야가 기본설계, 공정기술, 감리업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건설에 동원토질이 앞장 서겠습니다

營業分野

- 土質調査 · 土質試驗
- 平板 및 파일 載荷試驗
- 構造物 基礎, 土留構造物, 軟弱地盤處理 工法 및 施工監理
- 地下水開發 · 그라우팅工事

經營陣 및 技術者

- 代表理事 張麟變
- 副社長 李仁健
- 技術士(應用地質) 尹基述
- 專務理事 李基兆
- 專務理事 姜信哲
- 技術士(土質 및 基礎)

(株) 東原土質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49-3번지(삼영빌딩2층) TEL : 595-5040~6, FAX : 532-5044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65)

加工施設用地

漁具干場의 配置

어망을 어선에서 내리거나 실는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휴게 안벽 배후의 제1선 용지에 어구간장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荷捌所 용지와 같이 제1선 용지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시설 용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2선 용지에 배치하여도 상관없다.

加工施設用地

概說

가공시설 용지는 수산물의 가공공장을 시설하기 위한 용지이다. 일본에서 식용으로 하고있는 어패류 가운데 신선한 漁貝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은 전체의 3분의 1이 하이고 그의 대부분은 가공되어서 소비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산업 방향을 비추어 볼때 현지가공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공시설 용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의 수산물 가공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으며 가공원료나 지역에 따라서 매우 전망이 좋다.

加工工場의 規模와 用地의 所要面積

가공공장의 형태는 가공원료의 종류나 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따라서 가공의 공정에

어서도 원료에서 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일부의 공정만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공공장의 규모를 단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우 개략적인 산정방법을 예시한다. 이것을 참고로 새로 지역성을 가미하여 가공공장의 규모와 용지의 소요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공공장의 규모와 용지의 소요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차례에 따라 한다.

- ① 가공용 원료의 수량을 산정한다. 가공용 원료는 가공공장이 건설되는 어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항에서 투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② 가공공장의 연간 가동 일수를 산정한다.
- ③ 원료 1톤당 가공공장의 소요 면적을 산정한다. 여기서 산출한 수치는 가공공장의 종류, 규모, 지역성 등에 따라 크게 다르나 보통 표1의 수치를 사용하여도 차질은 없다.
- ④ 가공공장의 소요 면적을 산정한다.

가공공장의 소요 면적을 A로 하면

$$A = \frac{M}{N} \times L$$

다만, M : 연간 원료의 처리량
N : 가공공장 가동 일수
L : 원료 1톤당 소요 면적

⑤ 가공공장의 소요 면적을 견제율로서 제하고 가공공장 용지의 최소 필요 면적을 구한 다음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면적을 더하여 소요면적으로 한다.

加工工場의 配置

가공공장 용지의 배치는 그 가공의 형태에 의해서 각각 조건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① 주위에 도로가 배치되어 원료, 제품의 투입, 반출이 편리할 것 ② 오수, 악취 등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피해를 미치지 않고 그 처리가 용이할 것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선용지의 배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 1> 가공공장 면적의 原單位

加工種類	原魚(貝類)1톤당 所要面積
天日 加工場	海藻素乾 3,500 (m ² /톤) 魚貝素乾 1,400
加工場	海藻素乾 200~300 海藻鹽藏
	가키處理 60~100 調味加工 詰
	핏시밀(어분) 20~50

소양(養育)은 혼하게 피부에 나타나고 증상으로 보이고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수용체가 있어서 그곳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말초신경을 따라 중추신경계까지 도달하여 소양감을 느끼게 된다. 소양감은 기계적 압박을 받거나 전기자극, 열자극 등의 물리적 자극과 산, 알칼리 및 다른 물질의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다. 사람에게 따라 같은 자극이라도 가려움증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정도의 차이도 있다.



소양증

술·담배 자극적 음식 피해야

또한 동일한 사람도 때때로 따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보다 예민하게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며 불안이나 공포감 역시 자극에 민감하게 한다. 부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 우리 몸 중에서도 코쿠멍 주위, 항문과 생식기 부위가 특히 민감하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소양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피부질환 중 소양증이 심한 것들을 보면 음모진피부염, 아토피성피부염, 만성단순태선, 아토피성소양증, 한랭성소양증, 접촉성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염, 소양증으로 자꾸 긁게 되면

본래의 피부질은 변화되어 굵은 자국이 나고 혈관이나 모근이나 갈라지고 색소침착 등이 지속되며 가중처럼 두터워진다. 또 소양증은 내부장기에 병이 있을 때 같이 동반되는 한 증세일 수 있다. 소양증의 치료는 그것이 본태성이거나 전신질환에 동반되었거나 혹은 분명한 피부질환에 의한 것이든 간에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안올라져 특수요법이 가능한 경우는 전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증요법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양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가렵다고 자꾸 긁는 습관을 없앤다. 정신적인 긴장은 소양증을 유발하므로 이를 조절하는 음료인 커피, 홍차, 초콜릿, 콜라 등과 술을 금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제품의 옷을 피부와 직접 닿게 입으면 자극이 되어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 갑작스런 온도변화를 피하고 목욕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목욕시에는 피부유효제를 목욕물에 타서 사용하고 오일 등 을 바르는 것이 노년성 및 동계 소양증에 도움이 된다. 일 시적이라도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이 있으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금성기에 신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1. 상속세제도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3. 신고와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일반 4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금이 24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상속의 포기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5. 상속세액
○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 류	공 제 액
○ 미납부공과금	전액
○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부채	전액
○ 기초공제	6,000만원
○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 2,000만원 20세까지 연수×300만원 3,000만원 75세까지 연수×300만원
○ 주택공제 3대이상 대물림 주택등은 추가공제	기초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산림상속공제	전액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일반지역·특정지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

- 산된다.
-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1.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 2인에 한함
 -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농지·초지·산림지로 보아 상속공제 인정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 초과	3억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생활법률